

2017년도 국가 항암신약개발사업 사업단장 공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과 신약개발사업 육성을 목적으로 국가주도의 항암신약개발을 위한 『국가 항암신약개발사업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가 항암신약개발사업단』의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할 사업단장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단 개요

□ 사업단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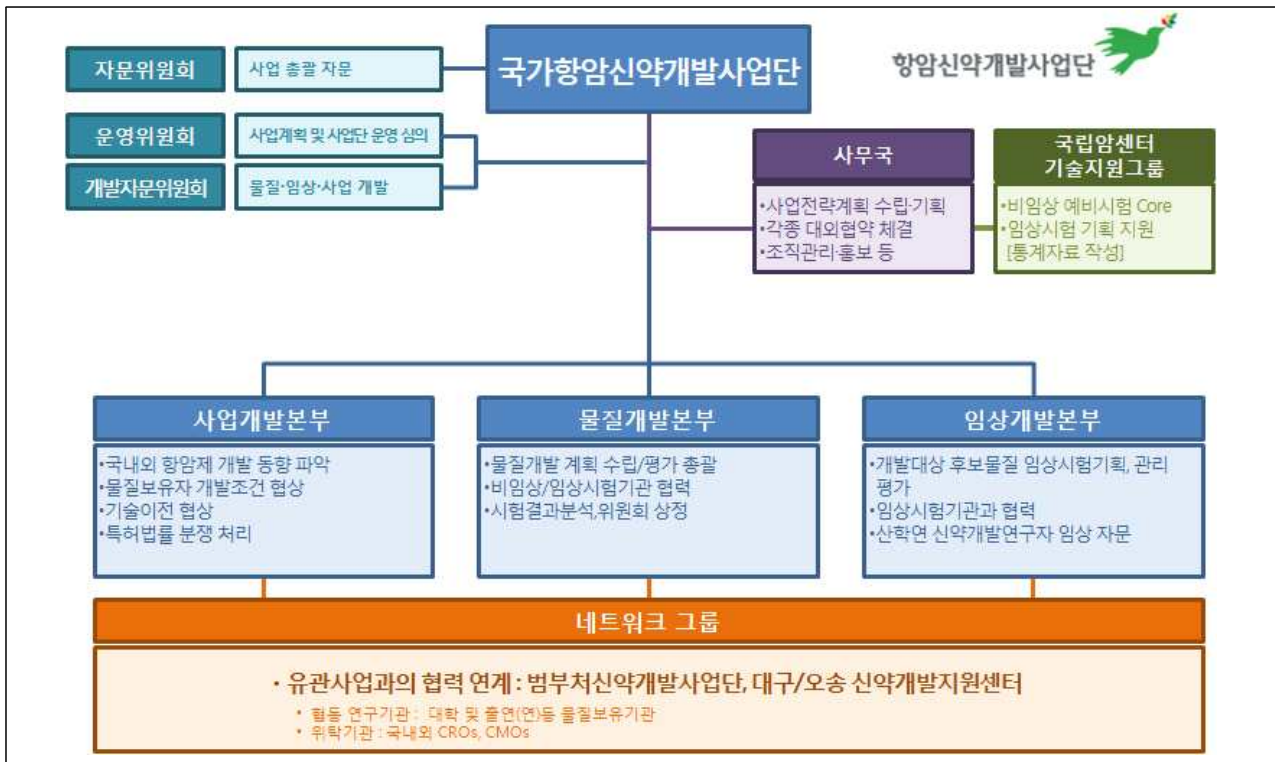
- 국가 항암신약개발사업단

“국가 항암신약개발사업”이란?

- 국가 R&D투자와 민간 연구를 통해 발굴된 후보물질 중 유망물질을 선별하여 후속 개발하고 제품화 단계로 승계
- 기존 인프라의 조직화를 이끌어내어 최적의 신약개발 시스템 구축
-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후보물질 발굴 및 선별에서 임상시험까지의 항암신약개발 과제를 관리 및 지원하는 구조를 추구

□ 추진체계

<사업단 조직도(안)>



- 국립암센터를 주관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사업단장은 공모
 - 국립암센터법에 의해 국내 항암신약개발 역량,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암센터를 지정
 - * 국립암센터법 제5조(사업): 국립암센터는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등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
- 사업단은 사무국을 설치하여 연구관리 및 행정지원, 전문서비스(인허가, 특허관리, 기술이전 등) 지원을 위한 외부기관 활용 등을 총괄
- 사업단장으로는 공모를 통해 역량있는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주관연구기관은 사업단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

2. 사업단 지원

□ 지원기간 및 규모

- 지원기간 : 총 4년 지원(2+2, 2단계)
 - 주관연구기관 : 국립암센터
 - 사업단장의 임기 : 4년(2+2)
 -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재신임 여부 결정
 - 사업단장의 보수 : 2억 3천만원 내외(인센티브 포함)
 - ※ 향후 계약 과정에서 변경가능
 - ※ 1차년도 연구기간은 9개월('17년 4월~'17년 12월)임
- 당해연도('17년) 지원규모 : 7,619백만원 이내
 - ※ 주관연구기관은 실험 시설 및 장비, 신약개발 관련 내부 과제와 연계하여 동 사업 추진
 - ※ 사업단 지원기간은 '17.4월~'21.3월(총 4년), 총 연구비(안)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16.8월)를 반영하여 국고 623억원

3. 사업단장의 역할

□ 역할

- 사업단장은 총괄책임자로서, 사업단 내에 모든 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책임지고 운영함
 - 신규 과제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및 과제 선정
 - 당해연도 및 단계별 계획에 따라 진도관리 및 평가
 - 연구목표 달성 여부 검토 등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감안하여 과제의 중단·변경 및 연구개발비 투입규모 등 조정
- '국가 항암신약개발' 사업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조직) 구성·운영
 - '사업단 과제추진 프로세스'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운영

4. 사업단장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사업단장의 자격 및 요건

□ 신청 자격

- (기본조건) 암질환 관련 분야 또는 신약개발분야에서 연구개발 수행 능력이 뛰어나며 국가 공공보건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고, 경영관리 능력이 탁월한 산·학·연 전문가 및 신약개발 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
-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음

연구기관	지원 자격
대학 및 기업부설연구소	○ 부교수이상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국/공립 연구기관	○ 연구직 과장 또는 연구관 5년 이상 ○ 기술직 4급 이상 ○ 정부출연연구소의 책임급 연구원 이상
국공립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소지자로서 면허 취득 후 12년 이상

- 사업단 사업기간 동안의 주관연구기관 채용을 전제로 영입된 외부 전문가 참여를 권장함
- 사업기간 동안 국가 항암신약개발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의 동의를 득한 자

나. 사업단장 선정절차 및 평가

□ 사업단장 선정절차

- 서류 사전선별 심사
 - 신청요건에 대한 결격사유 및 제출 자료의 미비사항 등 점검
 - * 허위사실 기재, 결격사유가 보완되지 않을 시 응모 취소
- 선정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에서 3배수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함
 - 선정위원회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를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구성
- 선정위원회의 2차 구두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사업단 운영관리지침 제4조에 근거하여 평가관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결정

□ 사업단장 평가

- 연구수행능력 : 연구능력, 연구성과의 탁월성 및 우수성
- 운영관리능력 : 기획·관리 능력, 지도력 및 가치관
- 사업단 운영 계획 : 연구개발 목표와 범위, 연구개발 추진전략, 연구성과의 활용전략 등
 - ※ 단계 평가시 결과에 따라 연구성과가 불량할 경우에는 사업단장 경질 및 예산 삭감 등 엄중한 성과 관리 수행 예정

5. 신청방법

□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 사업단장 신청서

※ '사업단장 신청서'는 2월 17일 업로드 예정

※ 첨부파일의 『사업단장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구두평가지 자료는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활용할 수 있음

- 사업단장 신청에 대한 현 소속기관 공문 및 동의서

○ 제출기간 : 2017년 3월 16일까지

※ 단독응모시, 제출기간 1주일 연장 예정

○ 제출방법 : 방문,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으로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 5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신약기기개발단

- 문의처 : 신약기기사업팀 김진아(043-713-8265, kimja0302@khidi.or.kr)

○ 기타 참고사항

-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 예정

6. 향후 추진 일정

○ '17. 2. 중 사업단장 공모

○ '17. 3. 중 사업단장 신청서 접수마감

○ '17. 3. 사업단장 선정평가 결과(안) 평가관리 전문위원회 심의

○ '17. 4. 사업단 운영 개시